(주)광림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4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고로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03월 31일(목)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484 (주)광림 본사 교육실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안건》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43기(2021.01.01~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별첨>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성석경 재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양선길 재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이동철 신규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별첨>
 제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별첨>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4호에 의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회사홈페이지(http://www.kanglim.com)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내에 관한 사항
 코로나19(COVID-19) 확산과 관련하여 총회장 건물 출입시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등 의심환자 발생시 부득이하게 주주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총회장 건물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주주총회 참석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비상상황 발생으로 주주총회 장소 폐쇄 조치시 부득이하게 개최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전자공시 등을 통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03월 16일

주식회사 광 림
대표이사 성 석 경 (직인생략)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은행장 허 인

<별첨>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 전	변경 후	이 유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신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1. 전자상거래와 관련 유통업 1.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업 1. 시스템 구축 및 통합개발 용역 서비스업 1. 소프트웨어 용역업 1. 디지털콘텐츠 제작과 판매업 1. 출판물 제작과 판매업 1. 증권정보 제공업 1. 온라인정보 제공업 1. 경영자문 및 컨설팅 1. 인터넷뉴스 서비스업 1. 외국환거래법상의 소액해외송금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사업구조 다각화
제 9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생략)	(삭제, 2022.03.31)	- 종류주식 관련 조문 정비
제 9 조의 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생략)	(삭제, 2022.03.31)	- 종류주식 관련 조문 정비
제 9 조의 4【전환주식】 (생략)	(삭제, 2022.03.31)	- 종류주식 관련 조문 정비
제 9 조의 5【상환주식】 (생략)	(삭제, 2022.03.31)	- 종류주식 관련 조문 정비
(신설, 2022.03.31)	**제 9 조의 7【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액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억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 0%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 연도가 있는 경우 그 배당분에 대하여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 종류주식 관련 조문 정비

	있다. ⑧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여,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2.03.31)	**제9조의8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억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 0%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그 배당분에 대하여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⑧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⑨ 제⑦항 또는 제⑧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 비율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⑩ 제⑦항 또는 제⑧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 종류주식 관련 조문 정비
(신설, 2022.03.31)	**제9조의9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제9조의7 및 제9조의8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9조의7 및 제9조의8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 종류주식 관련 조문 정비
(신설, 2022.03.31)	**제9조의10 【이익배당, 의결권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및 주식의 상환에 관	- 종류주식 관련 조문 정비

	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억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 0%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그 배당분에 대하여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⑦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⑧ 상환기간은 종류주식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22.03.31)	**제9조의11 【이익배당, 의결권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억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 0%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 연도가 있는 경우 그 배당분에 대하여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⑥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⑧ 제⑥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 종류주식 관련 조문 정비
(신설, 2022.03.31)	**제9조의12 【이익배당, 의결권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제9조의10 및 제9조의11의 성격을 동시	- 종류주식 관련 조문 정비

	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 9조의10 및 제9조의11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신설, 2022.03.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성석경 재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관계	신규선임여부
성석경	58.09.02	'88 ~ '92 Texas A&M대학교 전기공학박사 '92 ~ '03 삼성중공업(주) 전기전자사업부장 '03 ~ '06 (주)아이브릿지 대표이사 '15 ~ '17 창업진흥원 멘토위원 '14 ~ 현재 (주)광림 고문 및 대표이사	이사회	보통주 58,000주	해당없음	재선임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결격사유유무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양선길 재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관계	신규선임여부
양선길	62.11.30	'89 ~ '01 (주)우성건설 차장 '01 ~ '11 (주)동양건설산업 부장 '13 ~ '18 (주)쌍방울 대표이사 '16 ~ 현재 (주)광림 사내이사	이사회	보통주 8,000주	이사	재선임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결격사유유무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이동철 신규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관계	신규선임여부
이동철	66.03.25	'94 (주)광림 입사 '16 ~ '21 (주)광림 생산본부장 '22 ~ '현재 (주)광림 사업기획팀 팀장	이사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신규선임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결격사유유무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당기(제44기)	전기(제43기)
주주총회 승인금액	3,000,000,000원	3,000,000,000원

제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당기(제44기)	전기(제43기)
주주총회 승인금액	150,000,000원	150,000,000원